

“내가 지킨 정보보안 신뢰받는 서울메트로!”



서울메트로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**광고물등관리규정 개정 건의**

1. 관련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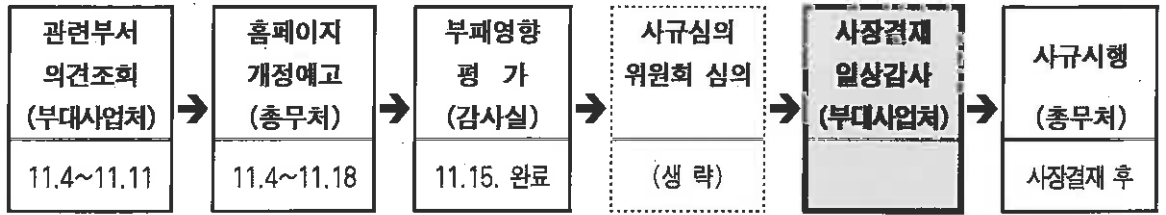
- 가.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2957('16.3.22.) 『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협조요청』
- 나.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6643('16.6.16.) 『지방 공사·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 확정 및 정비지침 배포』
- 다. 부대사업처-8989('15.12.28.) 『15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임대 시설물 체납 연체료 조정(안)』
- 라. 경영관리처-7493('16.10.31.) 『직제규정중개정규정 시행』
- 마. 경영감사처-97('16.11.15.) 『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통보』

2.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조항, 내부결재로 기 시행하고 있는 연체료 조항,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책 변경 및 유관 법률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'광고물등관리규정'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.

가.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

조 항	개정사유	주요 개정내용
제9조 제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광고대행자 자격 요건에 대해 자의적 운영 소지 방지 (서울시 유사행정규제 정비 대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당 조항 삭제 - “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
제17조 제1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체이율 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, 형평성 문제 발생 ('15년 행정감사 지적사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내부 결재에 의해 기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이율을 명시하여 기간 별 이율을 차등 적용토록 조항 개정 - 당초 15% → 기간별 12~15% 차등 적용
제25조 제2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조직개편에 따른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책 변경 사항 정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(담연직)의 직책이 본부장 에서 실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책 사항 개정
제7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률 명칭 변경 사항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된 사항 반영

나. 개정 절차



※ 현재 사규심의위원회 심의(생략) 단계까지 완료

※ 유사행정규제 정비 대상, 기시행 사항, 직책·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으로 사규심의 절차 생략

※ 개정 시 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행자부 경영평가 가점 반영(0.5점)

- 붙임**
1. 광고물등관리규정 개정(안) 1부.
 2. 유사행정규제정비지침(행정자치부) 1부.
 3.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 확정 통보 및 실적제출 요청(문서) 1부.
 4. 임대시설물 체납 연체료 조정(안) 내부결재 문서 1부.
 5.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. 끝.

사원	김기정	부장(업무대행)	남진만	광고팀장	정호인	부대사업처장	김정환
전략사업실장	김석호	사장	11/23 김태호				
협조자	법무팀장	엄익철					
일상감사	일상감사팀-1908	[감사]감사	11/22				
		실장	장상덕				
시행	부대사업처-9076(2016. 11. 23.)			접수 ()			
우	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(방배동)					/ www.seoulmetro.co.kr	
전화	02-6110-5847	전송		/ leadingkee@seoulmetro.co.kr		/ 대시민공개	